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3. 13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「2003년2월28일」 까지 인 것을 「2003년8월31일」 까지로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초과현원 신분유예기간 연장 : 2003. 2. 28 → 2003. 8. 3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정원불부합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지침 이첩통보

(시 기획 12220-20396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558호로 공포된 부칙 제3조 제③항중 “초과현원에”를 “초과현원(집행기관 3명)에”로 하고 “2003년 2월 28일까지”를 “2003년 8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